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3
----------	----

제안년월일 : 2006. 9. 8.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은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어 향후,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의원의 징계심사가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관련 조항 문구의 개정이 요구되며, 회의록을 책자에서 시디-롬으로 변경 제작함에 따라 자구정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관련 조항을 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전자 임시 회의록의 자구정정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안 표결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립표결 방법을 우선하고 의안의 내용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나.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방법과 명확한 용어의 구분이 요구됨에 따라 규칙 제41조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수정

- 다. 회의록에 표결 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 수,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1호)
- 라. 발언자가 자구정정을 요구할 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임시 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수정함(안 제46조제1항)
- 마.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사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관련 조항 문구를 수정함(안 제70조, 제71조제1항2항3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 제79조제1항제2항제4항, 제82조 제1항, 제8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71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중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동조제2항 중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를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와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로 한다.

제41조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한다.

제44조 제1항 제11호 중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 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을 “전자임시 회의록이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자격심사”를 “윤리.자격심사”로 한다.

제70조 제1항 중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를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71조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동조 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동조 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2조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동조 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5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9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동조 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동조 제4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3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 【표결방법】</p> <p>① <u>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u></p> <p>② <u>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u></p> <p>③ ~ ④ (생략)</p> <p>제41조 【투표절차】 <수정></p> <p>① ~ ④ (생략)</p> <p>제44조 【회의록】 ① (생략)</p> <p>1. ~ 10.(생략)</p> <p>11. <u>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u></p> <p>12. ~ 14.(생략)</p> <p>②(생략)</p>	<p>제40조 【표결방법】</p> <p>① ----- <u>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u></p> <p>② ----- ----- <u>투표용지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와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1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제44조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1. ~ 10.(현행과 같음)</p> <p>11. <u>표결 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u></p> <p>12. ~ 14.(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p> <p>② (생략)</p>	<p>제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전자 입시 회의록이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장 <u>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u></p>	<p>제7장 ----- <u>윤리자격심사</u></p>
<p>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p> <p>② (생략)</p>	<p>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②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③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p> <p>② 윤리특별위원회-----.</p> <p>③ 윤리특별위원회-----.</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u>윤리특별위원회</u>-----</p> <p>-----.</p> <p>②-----<u>윤리특별위원회</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5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p>	<p>제75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p> <p>-----</p> <p>----- <u>윤리특별위원회</u> -----</p> <p>-----.</p>
<p>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제 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p> <p>-----</p> <p>----- <u>윤리특별위원회</u> -----.</p> <p>②-----</p> <p>-----</p> <p>----- <u>윤리특별위원회</u> -----.</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⑤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윤리특별위원회</u>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2조 【심문 및 반영】 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 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2조 【심문 및 반영】 ① <u>윤리특별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u>윤리특별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